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기초출원/등록 [상표]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을 위해서는 본국의 출원 또는 등록의 대상표장과 동일하고, 지정상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출원을 해야 함. 이 경우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본국의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라 함.

기준일 [지재권일반]

미국 특허법 제102조 제(b)항에서 규정하는 미국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전의 날을 의미.

기재요건 [특허]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요건. 우리 특허법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 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2조 제3항)고 명시하고 있음. 미국 특허법상으로는 제112조에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개시 (disclosure) 요건중의 하나로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 주로 최초 출원된 청구항에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할 경우 추가된 청구항의 내용이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룰 때 쟁점이 되는 규정임.

기재불비 [지재권일반]

명세서의 기재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야 할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 특허 출원의 거절이유가 된다.

기일 [지재권일반]

특허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이 답변할 수 있는 지정기간의 최종일.

기여침해 [지재권일반]

특허권침해를 고의로 돕는 행위. 미국 특허법 제271조 제(c)항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부품 또는 특허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재료나 장치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침해가 되는 것. 또는 다른 용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여침해가 되어 특허권침해와 마찬가지로 취급됨.

기술평가제도 [실용신안]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도입(법률 제5577호)에 따라 부실권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실용신안권자가 다른 사람이 자기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권리행사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특허청에 기술평가의 청구를 하여 유효한 권리인지의 여부를 평가 받도록 하는 제도. 2006년 10월 1일부터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폐지로 기술평가제도가 폐지됨.

기술평가서 [실용신안]

선행기술문헌 및 그 선행기술문헌에서의 유효성에 관한 기술평가의 보고서(실용신안법 제21조). 실제적 요건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여된 권리의 유효성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